손해배상(기)

[서울고등법원 2016. 11. 3. 2015나2049406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원고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영진 담당변호사 김일진) 【피고, 피항소인】주식회사 카카오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이승재) 【제1심판결】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8. 17. 선고 2013가합107912 판결 【변론종결】2016. 8. 25.

【주문】

- 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- 가. 피고는 원고에게 2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8. 25.부터 2016. 11. 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총비용 중 4/5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,534,814,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 【이유】

】1. 전제된 사실관계

[이유]

11. 전제된 사실관계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